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5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5. 14.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5274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8,032,7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P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8,032,719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감축하고, 원상회복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8. 2. 27.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2.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018. 3.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8. 3. 13.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3.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F은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018.

3.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위 1)항과 2)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E와 F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라도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E, F 및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E, F의 대표이사로서 E, F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5) E가 2019. 1. 8.부터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9. 3. 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또한 F이 2019. 1. 16.부터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9. 3. 1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D는 2018. 9. 7. 피고로부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기간 2018. 9. 7.부터 2023. 9. 6.까지로 정하여 4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3,7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18. 9. 7. 접수 제321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2,500,000원, 채무자 D로 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D는 2018. 9. 7.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35,230,136원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P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11. 5.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12. 17.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16,797,570원에 대하여 교부권자(당해세)인 목포시에 184,900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1,241,685원, 교부권자(비당해세)인 목포세무서에 2,108,13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3,262,85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0. 1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카단10652)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11. 2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43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E 및 F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은 2019. 3. 5. 및 2019. 3. 15. 각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E 및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9. 1. 8. 및 2019. 1. 16.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3. 5. 및 2019. 3. 15.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D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는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무 원금 200,000,000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 20,000,000원, J에 대한 보증채무 78,796,000원, I에 대한 대출채무 35,230,136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채무 약 15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18. 10.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D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D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원고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일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 명의의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 이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발급받은 D에 대한 신용정보에는 원고, 전남신용보증재단, J에 대한 D의 채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쉽게 D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인 I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I에 35,230,136원은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고 피고에게 63,262,85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63,262,855원에서 말소된 I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5,230,136원을 공제한 28,032,7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28,032,719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이지영, 판사 김윤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64.5172㎡

2층 445.3412㎡

3층 445.3412㎡

4층 445.3412㎡

5층 445.3412㎡

6층 445.3412㎡

7층 445.3412㎡

8층 445.3412㎡

9층 445.3412㎡

10층 445.3412㎡

11층 445.3412㎡

12층 445.3412㎡

13층 445.3412㎡

14층 445.3412㎡

15층 445.34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8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목포시 대 29928㎡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9928분의 66.5063

